

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금촌역~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본 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 철거 대상자에게 그 용도가 폐지된 역전구거부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여 철거민의 오랜숙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구 재향군인회 사무용으로 사용하던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에게 토지(금촌동 311-22)를 매각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함.
- 불법행위로 발생한 법원4리 산40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.
-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전망대 우측 임야를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을 겸한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통일전망대 - 통일동산 - 조각공원 - 임진각을 연결하는 안보관광 루트의 한 구성점으로 민자사업을 적극유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처분 및 취득토지 현황

구 분	처분재산명	위 치	면적(m ²)	금액(천원)	비 고
공유재산	역전구거부지	금촌동 329-339번지 외 34필지	2,344	2,600,000	처분
“	구 재향군인회관 부지	파주시금촌동311-22	248	303,428	“
사유재산	법원4리 근린 공원조성 부지	법원읍 법원리 산39-5번지와 1필지	10,408	104,080	취득
사유·국유 재산	오두산문화예술 공원조성 부지	탄현면 성동리 산42번지와 2필지	128,709	1,006,293	“

□ 검토의견

가. 역전 구거부지

○ 금촌역~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에 저촉되는
지장물 철거대상자에게 그 용도가 폐기된 역전 구거부지를 주거용
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,

- 국유토지 매입비 2,541백만원(제1회 추경예산서 248p)과 지난 제46
회 임시회의시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예정가
2,900백만원과의 차액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과,
- 지난 제46회 임시회의시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의 취
득 승인을 받았음에도 금촌역~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
장물 철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매각하고자 함
은 당초 국유재산 취득목적과 부합된다 하겠으나,

- 지난 제36회 파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('95. 3. 20) 회의시 동 건과 관련된 진성서 처리의건(하천복개후 택지로 조성하여 불하요망)을 심의함에 있어 진정인들(김양배외 13명)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과,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.

나. 구 재향군인회관 부지

- 구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사유건물('79. 6. 23 신축)이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거 건물소유자(대한민국 재향군인회)에게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95조 (잡종재산의 매각)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25.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

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

제38조 (수익계약 매각범위등)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익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(개정 '99. 1. 16)

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(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읍·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

다. 법원4리 근린공원조성 부지

- '96. 9. 26 산림형질변허가를 득하였으나 '97. 6. 14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무단 방치된 동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산사태등 재해피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
- 부지매입 후 공원시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라. 오두산 문화예술공원조성 부지

-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임진각을 잇는 안보관광 루트를 형성하여 볼거리 휴식공간을 겸한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,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으나,

- 동 부지매입 후에 발생될 민자유치 계획 및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지방제정법시행령

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